제934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(신설) ○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한 시설에서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▶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	1.중요
2	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(강화) ○ 금융투자상품, 사행행위 이용 대가 등과 같이 가상자산을 신용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 ▶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	1.비중요
3	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(강화) ○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·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형식승인 사항을 변경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▶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성능검사 및 판매중지 등의 요건 신설(신설) ㅇ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* 성능검사를 할 수 있음 * (성능검사 대상) 1. 형식승인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형식승인 대상설비인 경우, 2. 그 밖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– 성능검사의 결과 중대한 결함*이 있는 경우 제조자(또는 수입자)에게 판매중지, 보완, 교환, 회수 또는 폐기 등을 명하게 함 * (중대한 결함) 1. 성능시험 기준 미달, 2. 검정 기준 미달 ▶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	
4	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국토교통부)	1.실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(신설) ㅇ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–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사업자 등록(지정취소) –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 시정명령 미이행(일정기간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) – 실증사업으로 다른사람에게 위해(일정기간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) ▶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버티포트 개발사업 허가기준(신설) ㅇ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요건을 신설 – 최소 자본금 기준, 토목 및 건축 분야 기술인력 수 기준 등 ▶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3.버티포트 개발사업자 행정처분 기준(신설) ㅇ 버티포트 개발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–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(허가취소) –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개발(원상회복) – 허가사항 위반(공사중지 30일~90일) –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(허가취소) –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(공사중지 30일~90일) ▶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4.도심항공교통사업자 행정처분 기준(신설) ㅇ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행정처분 신설 –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(지정취소) –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(사업중지 30일~90일) – 시범운용구역내에서 다른 사람에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위험을 발생시킨 경우(사업중지 30일~90일) ▶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산림청)	1.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(신설) o 사후 모니터링* 기관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마련 * 산림복원사업 종료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, 식생 회복력 등 복원의 효과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 –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·운영: 지정취소 – 사후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,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: (1차위반) 시정명령 2개월, (2차위반) 시정명령 2개월, (3차 이상 위반) 지정취소 – 운영실적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: (1차위반) 시정명령 2개월, (2차위반) 시정명령 2개월, (3차 이상 위반) 지정취소 –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: (1차위반) 시정명령 2개월, (2차위반) 지정취소 ▶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2.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등(신설) o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 및 인증심사항목 등 신설 –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생식물 종자 포장의 외부에 인증표시 – 인증을 위해 자생식물 종자의 여부, 종명, 발아율, 효율을 심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고시 ▶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설정(신설) ㅇ 연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연간 전력사용량 20만MWh/y 이상 시설의 소유자 대상으로 예상 사용에너지 일정비율을 분산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치의무를 부과 – 연도별 의무비율은 시행년도(2024년) 2%에서 2040년은 20%까지 규정하며, 지역별 전력자립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 의무 부과 ▶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2.분산에너지 사업자 등록기준 및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마련(신설) ㅇ 분산에너지사업 중 저장전기판매사업의 인력, 시설,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 ㅇ 분산에너지사업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 규정하고 그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마련 ▶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8조,제9조 3.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(신설) ㅇ분산에너지사업자가 설치한 설치물의 탈락, 전기로 인한 화재, 감전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, 가입대상, 보험금액 등 규정 ▶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65조	1.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배전망관리방침 마련 및 공개 의무(신설) ㅇ 배전사업자가 배전망관리의 목적, 범위, 조건,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배전망관리방침을 공개하고,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 ▶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5.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사업자 규모 설정(신설) ㅇ 10㎿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업 승인등(승인 · 인가 · 허가)을 받기 전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 – 단, 군사 ·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, 국가첨단전략산업,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실시대상에서 제외 ▶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8조,제29조	
7	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 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(여성가족부)	1.도박 및 사행심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(신설) ㅇ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* 및 한국마사회법, 경륜·경정법의 경마, 경륜, 경정을 모사한 게임 제공 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* 카지노 게임 예시 : 포커(텍사스 홀덤), 블랙잭, 바카라, 룰렛, 다이사이(주사위게임), 머신게임 등 ▶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전체	1.비중요